

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8.27.(화) 10:00

「고령군 미송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마송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산림 휴양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관리를 통해 휴양시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 정비 (안 제7조 및 별표2)
- 나.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 다. 위약금 규정 신설(안 제9조)
- 라. 입장 제한 및 퇴장 등 규정 신설(안 제10조)
- 마.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규정 신설(안 제11조)
- 바.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조)
- 사. 관리자 예약 규정 신설(안 제13조 및 별표3)
- 아. 매매·교환 등 금지 규정 신설(안 제14조)

4.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9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감사원의 주요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휴양림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휴양시설 관리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미송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2021. 4. 6., 2023. 4. 11.>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